

강원도립대학교 부속 학생상담센터 규정

(제정) 1998-05-12 규정 제016호
(개정) 1999-10-30 규정 제059호
(개정) 2000-10-19 규정 제086호
(개정) 2012-10-15 규정 제285호
(개정) 2013-07-23 규정 제331호
(전부개정) 2016-02-18 규정 제388호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(개정) 2017-03-22 규정 제461호
(개정) 2021-08-03 규정 제579호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2조(명칭) 명칭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생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라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3조(기능) 본 센터는 대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과 학교생활의 원만한 적응 및 사회진출 준비를 위한 상담·연구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생상담업무를 위한 연간 계획 및 운영
2.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
3. 성격, 인성, 적성 등 각종 심리검사
4.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
5. 자살, 약물, 게임중독 등 위기상담
6. 학생생활 제반문제 조사연구 및 발간
7. 교직원과 교직원 자녀를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
8. 상담실습생 교육·훈련 및 지역사회 상담기관 네트워크 관련업무
9. 학생들의 인성함양 및 자기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
10.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11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 2 장 조 칙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이 상담학을 전공하거나 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학생 상담을 담당하는 경우 책임시수를 감면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1.8.3.>

제5조(상담원) ① 전문상담원은 관련학과(상담, 심리, 교육학과) 학사과정 이상의 학력과 유관기관이나 국가가 공인한 상담(심리) 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각종 상담 및 검사활동과

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21.8.3.>

② 필요 시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공인 자격을 갖춘 자를 객원상담원으로 초빙 할 수 있으며 학생 상담을 담당한다. <신설 2021.8.3.>

제6조(운영위원회 구성) 학생들의 상담욕구에 보다 전문적으로 부응하고, 학생상담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을 대표하는 2명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3.22.>

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상담센터의 기본 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
-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③ 세부사업 시행과정 검토, 평가 및 성과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 회의)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3 장 상담자문위원 및 기타

제9조(상담자문위원) ①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상담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본교 또는 다른 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정보보호) 상담원 및 운영위원, 관련 교직원은 학생상담과정에서 획득한 일체의 내용과 정보를 유포해서는 아니 되며, 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.

제11조(평가 및 사후관리) ① 본 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, 평가를 실시한다. <개정 2017.3.22.>

②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정하고 총장이 승인한다.

③ 평가결과보고서 및 당해 연도 업무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검토를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고,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차후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.

제12조(재정) 재정은 본교의 교비 등으로 충당하며,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(2016. 2.1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규정의 개정) 다음 각 호 규정 본문의 '학생생활연구소'를 '학생상담센터'로 한다.

- 1. 강원도립대학 사회봉사센터 운영규정 제4조3항
- 2. 강원도립대학 학생지도위원회규정 제2조
- 3. 강원도립대학 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3항
- 4. 강원도립대학 장애학생지원규정 제5조2항, 제7조2항

5. 강원도립대학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제3조2항

부칙(2016. 4.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3.22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0.10.19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 5. 3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4.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5.13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79호, 2021. 8. 3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